

의안번호	제829호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1월 일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29
----------	-----

발의연월일 : 2025년 1월 일

발 의 자 : 이상식, 김종필, 김현문,
박지현, 이동우, 이상정,
박봉순

1. 제안이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장비 의무 구비 시설 외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할 경우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토록 권장할 것을 규정하고, 그 밖에 인용 문구 및 일부 용어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된 용어인 “응급의료기관등”의 정의 규정을 신설함.
(안 제2조)
- 법률에 따른 응급장비 의무 구비 시설 외의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할 경우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토록 권장할 것을 규정함. (안 제18조)
- 잘못 인용된 조항을 개정함. (안 제19조)
- (현행) 제17조제2항 → (개정) 제18조제2항

3. 의안전문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비용추계 : 해당 없음
- 협의 :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조례안예고 : 예고 대상(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법 제2조”로 한다.

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의료기관등”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 중 “응급의료기관 등”을 “응급의료기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구급차 등”을 “구급차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제17조제2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 중 “대해”를 “대하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p> <p>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협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p> <p><신 설></p> <p>3. (생 략)</p> <p>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p>	<p>제2조(정의) ① ----- -----.</p> <p>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2. “응급의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조치를 말한다.</p> <p>3. “응급의료기관등”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② ----- ----- 법 제2조</p>

<p>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p>	<p>----- -----.</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u>응급의료기관</u> 등의 지원 및 설치·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p>제3조(도지사의 책무) ----- ----- ----- <u>응급의료기관</u> ----- ----- ----- -----.</p>
<p>제15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지원단은 제1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센터, 응급의료기관, <u>구급차</u> 등의 운전자, 보건소 및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③ (생략)</p>	<p>제15조(자료협조 요청 등) ① ----- ----- ----- <u>구급차</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8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 의무 구비 시설 외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에게 <u>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u>를 권장할 수 있다. ②·③ (생략)</p>	<p>제18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및 지원) ① ----- ----- ----- ----- ----- <u>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도록</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① 도지사는 응급의료</p>	<p>제19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홍보) ① -----</p>

<p>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p> <p>3. (생략)</p> <p>②·③ (생략)</p>	<p>----- -----.</p> <p>1. (현행과 같음)</p> <p>2. 제18조제2항----- -----</p> <p>3.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재정 지원) 지역응급의료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22조(재정 지원) ----- ----- 대하여 ----- -----.</p>

관계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